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정재 · 유상범
김상훈 · 윤상현 · 김성원
서천호 · 이종배 · 이달희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(高所)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.

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 신설 등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고정식 고소(高所)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,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한다.

③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이 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정식 고소작업대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
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·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~ 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고정식 고소(高所)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</u>----- -----.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의2(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</u> <u>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,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</u></p>

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이 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